

◎ 부산전파관리소공고 제2021-77호

전파법 위반(검사불응) 무선국 행정처분 송달불능 내역

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송달되지 않은 행정처분 대상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.

2021년 11월 24일

부산 전 파 관 리 소 장

1. 송달불능 무선국 내역 및 처분내용

시설자명	주 소	허가번호	호출명칭	위반내용	처분내용
조*옥	경상남도 거제시 장평로6길	42-1997-20-0000209	314삼양호	무선국 정기검사 불응 (1차위반)	무선국 운용정지 1개월 (2021. 11. 9. ~ 2021. 12. 8.)
이*엽	경상남도 거제시 사등면 가조로10길	42-2017-20-0000574	350명성호		
류*귀	경상남도 통영시 항남1길	42-1991-20-0000298	301송명호		
류*귀	경상남도 통영시 항남1길	42-1993-20-0000163	302송명호		
류*귀	경상남도 통영시 항남1길	42-1995-20-0000274	303송명호		
류*귀	경상남도 통영시 항남1길	42-1995-20-0000326	304송명호		
박*부	경상남도 사천시 향촌1길	42-2017-20-0000570	303강명호		
윤*매	경상남도 통영시 착량길	42-2016-20-0000337	301용진호		
조*준	경상남도 거제시 일운면 내도길	41-2016-50-0000185	356대성호		

2. 근거법령: 전파법 제24조(검사) 및 제72조(무선국의 개설허가 취소 등)

전파법시행령 제118조(행정처분의 기준)

3. 처분일자: 2021. 11. 9.

4. 참고사항

가. 위 처분에 불복하여 이의를 제기할 경우,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법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, 또한 행정소송법 제18조에 의거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.

나. 운용정지 처분된 무선국을 검사 등 행정절차 없이 운용할 경우 관련 전파법에 의거 불이익을 받게 됨을 알려드리니,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.

다.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부산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(☎051-974-5192, 팩스051-974-5189)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